

## 화순군조례·규칙등공포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 4.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1. 4. 17

다. 상 정 일 자 : 2001. 4. 17

( 제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 )

####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재무과장 김 종 천

나. 개정사유

- 자치법규의 공포에 관한 사항만 규정된 조례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규치안의 입법예고 및 공포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다. 주요내용

-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 수렴기간 : 10일이상 ( 안 제2조 )
  - 자치법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 유관기관, 단체
- 입법예고기간 : 20일 이상 ( 안 제3조 )
- 입법예고방법 : 공보에 게재 ( 안 제4조 )
  - 신문, 방송, 컴퓨터, 통신, 기타 간행물등을 통하여 홍보
- 자치법규의 정비, 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 제출 ( 안 제5조 )
  - 누구나 가능
-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 및 관련자료에 대한 열람, 복사요청 ( 안 제6조 )
  -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가능
- 자치법규의 공포 번호 부여 ( 안 제7조 )
  - 누년 일련번호 부여
-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시행일 ( 안 제8조 )
  -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3.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양정열 )

- 본 개정 조례안은 종전의 조례가 자치법규의 공포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제정되어 있고 법제 업무운영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안에 대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등이 누락되어 있어,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조례안으로 전면 개정한 조례안 임 )
- 자치법규의 입안과정에서 누구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기관 단체등의 의견을 수렴토록 함으로써 행정편의가 아니라 군민을 위한 자치법규의 제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되어지며,
- 조례규칙 심의회와 심의 의결을 거치는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와의 상충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4. 질의 답변 요지 : “ 생략 ”

5. 토론요지 : “ 생략 ”

6. 심사결과 : “ 원안가결 ”

첨 부 : 화순군조례·규칙등공포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

## 화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화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화순군조례·규칙의입법예고및공포등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4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안의 입법예고 및 공포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견수렴)①자치법규를 입안하는 부서에서는 입안초기단계부터 당해 자치법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 및 유관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수렴기간은 긴급을 요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예고기간)행정절차법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 예고를 할 때에는 예고기간을 2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4조 (예고방법)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는 공보에의 게재로써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컴퓨터, 통신, 기타 간행물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5조 (입법의견의 제출)①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화순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입법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제공등)①군수는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 및 관련자료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사에 따른 비용은 화순군행정정보공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7조 (번호)①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하되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 하여야 한다.

②화순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의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일)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